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구축
및운영에관한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에 따라 법률 제3장의2(제59조의2~제59조의12)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3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 수·공동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임 받은 사항 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취소(안 제5조)

시·도지사가 전담기관을 지정 할 때 전담기관은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전담인력·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또

한 전담기관이 모기관의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도록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 취소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라. 전담기관 장의 임명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안 제6조~제7조)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운영계획, 예산안, 운영현황 및 결산 보고서 등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안 제8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할 때, 연구기관 등에 소속 되거나 부설기관이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기획·관리·평가의 역량 보유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관계 시·도지사가 체결해야 하는 상호규약의 세부사항을 나열함.

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주관 시·도지사 및 대학의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시·도의 부지사 및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위원회는 초광역 협업체계의 기본방향 및 연간 추진계획, 운영계획 및 전년도 결산·성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사. 이견의 조정 (안 제10조)

교육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초광역전담기관의 공동 지정 및 상호규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재정분담, 상호규약 체결 관련 이견이 있을 시 관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음.

아.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지정, 부위원장의 지명,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간사 등을 규정함.

자. 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12조~제13조)

지원위원회에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과관리, 평가·환류, 규제특례 적용, 초광역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안 제14조)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카. 시·도의 및 교육부의 성과평가 등 (안 제15조~제17조)

시·도지사는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안 제18조)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시행계획에 수정, 지원금액의 차등 배분, 평가의 가감점 차등 부여 등에 반영하며,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한 시·도 또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하여 개선 대책 수립 요구 및 사업의 일부 중단,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조치할 수 있음.

파. 규제특례의 신청, 관리·감독, 연장 절차 (안 제19조~제21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규제특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규제특례의 신청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함. 교육부 장관은 규제특례 부여 시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교육부장관은 특례기관장에 대해 규제특례 이행현황 등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상황을 관리 감독함. 법에서 위임한 규제특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및 취소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규제특례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4. 20. ~ 6.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12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지원체계”라 한다)란 지역의 발전 전략과 산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과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2. “상호규약”이란 둘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초광역 협업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행정협약을 말한다.

제2장 지역단위 추진체계

제3조(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위원회를 최초로 설치할 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그 이후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해당 시·도의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대학의 규모·유형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의결 방법·절차, 간사 및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 중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적 검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심의·의결 사항의 범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취소) ①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나.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모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모기관의 업무로부터 독립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별도로 구성할 것
 2. 전담기관의 예산을 독립된 회계로 모기관 예산과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것
 3. 전담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인사 관리, 예산 집행 및 업무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시·도지사가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 그 형태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④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이 법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전담기관을 지정·설립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장의 임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담기관의 장이 될 수 없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

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운영계획 및 예산안

2. 전년도 조직·인력 운영 현황 및 결산 보고서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설립 및 취소,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임기, 관리·감독 등 운영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초광역 추진체계

제8조(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등) ① 관계 시·도지사가 법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그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나.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협

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복수의 시·도에 걸친 광역 단위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보유할 것

3. 관계 시·도 전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②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는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상호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소재지 등 초광역전담기관의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비용 부담의 원칙 및 재정분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비용분담의 원칙에는 수혜범위, 재정여건, 사업규모, 참여 대학 수, 성과기여도 등을 고려한 분담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초광역전담기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절차, 자격 기준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주관 시·도지사의 선정, 임기 및 변경 절차와 역할,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선출 방식, 자격 기준 및 임기에 관한 사항

7. 상호규약의 변경·탈퇴·해산 사유, 절차 및 잔여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시·도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 구

체적인 분담 규모 및 방식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재정분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계 시·도가 법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그 형태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설립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지원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호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관 시·도지사 1명

2.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호규약에서 정하는 선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선출된 관계 대학의 장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도지사가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 시·도의 부지사 각 1명

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1명

2. 위촉직: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서 대학·지역발전·국가전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계 시·도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주관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주관 시·도지사의 임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호규약으로 정한다.

⑧ 초광역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 협업체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초광역전담기관의 연간 운영계획·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성과에 관한 사항

3. 시·도 간 공동 재정지원 사업의 배분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 협업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⑪ 이 영 및 상호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초광역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이건의 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초광역 협업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초광역전담기관의 공동 지정 및 상호규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재정 분담, 상호규약 체결 또는 제9조에 따른 초광역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초광역 협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중앙 추진체계

제11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9조의7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6제1항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
2. 재정경제부
3. 법무부

② 지원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9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심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원체계의 성과관리,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3. 고등분야 규제특례의 적용, 관리·감독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초광역 협업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가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산업계, 학계 및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일부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 산업 정책 등에 관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

2.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정보망 등 시스템을 보유할 것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법령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 및 결과, 운영비 집

행내역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평가

제15조(시·도의 성과평가) ① 시·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업수행주체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부의 성과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이하 “시·도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도의 지원체계 사업 성과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2. 시·도의 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 투자 실적 및 민간 투자 유치 노력

3. 시·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과

4. 그 밖에 지역대학 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정주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성과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 성과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기준, 절차, 공개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 성과평가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사업수행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원전략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정·보완
2.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액의 차등 배분
3. 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평가에서의 가감점 차등 부여

②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도 또는 사업수행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 방식의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요구
2. 해당 사업의 지원 범위의 조정 또는 지원 일부의 중단
3. 성과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③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치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시·도지사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6장 규제특례

제19조(규제특례의 신청) ①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내용(목적 및 필요성, 적용 대상 및 범위, 추진 일정, 관련 법령 등)
 2. 규제특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3. 규제특례 적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에 대한 보호계획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정기 신청: 매 학년도 적용을 목적으로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수시 신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규제특례의 내용, 유효기간,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특례의 관리·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특례기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특례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제특례 적용 내용의 이행 현황 및 성과
 2. 규제특례 부여 시 부가된 조건의 준수 여부
 3.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주요 영향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특례기관장은 규제특례의 내용(적용대상·범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변경 신청에 따른 심의·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59조의10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특례기관장은 규제특례 내용의 변경 필요, 중대한 문제 또는 부작용 발생, 부가 조건 이행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례 적용 대상 기관의 명칭·학과명 또는 학생 정원의 변경
2.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단순한 용어·문구의 수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⑥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사실관계의 소멸 또는 상황의 변경으로 특례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타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규제특례 부여 시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위원회가 규제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특례기관장(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특례의 연장)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례기관장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장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하려는 규제특례의 내용 및 기간
2. 기존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연장의 필요성
3.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른 부가 조건의 준수 여부
4. 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 현황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장: 대학 혁신 성과, 지역 산업 기여도 및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
2. 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관계 법령의 정비 지연에

다른 지속 적용 필요성 확인

- ③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특례기관장에게 연장된 유효기간, 조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변경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따른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이 영에 따른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제5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수행 방법 등을 위탁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받은 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시·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553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통합특별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합특별시가 설치된 경우, 통합 전 각 시·도에서 지정·운영하던 전담기관은 통합특별시장에 제5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에 제3조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 시·도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에 제6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립한 전담기관은 제8조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으로 보며, 통합특별시에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5조(최초 정기 규제특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기 신청 기한은 같은 호에도 불

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 및
조례 제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35